

「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」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」 제6조,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(고시 제2024-47호) 제4조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10. 25.

영 주 고 용 노 동 지 청 장



- 건 명 : 직업능력개발사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
- 근 거 :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,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및 제15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
				처분 제목	처분 사유	
김*섭	1964. 11.25.	상주시 북룡3길 (이하생략)	직업능력개발사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	직업능력개발계좌 잔액 전액 차감	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제외 대상	동 서류를 2024. 9. 25., 10. 15.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 (폐문부재)

- 공고기간 : 2024. 10. 25. ~ 2024. 11. 08. (15일간)
- 기타사항은 상주고용센터 담당자 김준창(Tel 054-559-828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